# 상용화기술개발사업(구매조건부·네트워크형) 수정공고 주요 변경 사항

## □ 개요

- '21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공고('20.12.30.) 하였으나 지침개정·
  시스템 적용 등으로 수정공고 필요
  - '21년 1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(시행령, 시행규칙) 시행에 따라 공고 변경사항 반영
  - 신청 접수기간 연장 : (당초) 1.18 ~ 2.8(2.1) → (변경) 2.1 ~ 2.19
- □ 주요변경사항
  -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주요 용어 변경

현 행					
주관기관					
공동개발기관					
총사업비					
정부출연금					
민간부담금					
참여율					
요건검토					
과제책임자					
사업계획서					
사업계획서 Part1					
사업계획서 Part2					

	개 선
<b>&gt;</b>	주관연구개발기관
	공동연구개발기관
	연구개발비
	정부지원연구개발비
	기관부담연구개발비
	인건비계상률
	사전검토
	연구책임자
	연구개발계획서
	본문 2
	본문 1

비고			
	용어	통일	

- ②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
  - (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) 비영리 법인(공기업 포함)은 예외라는 조항 신설('20년 3차 지침 개정사항 반영)
  - (부채율 1,000%이상 기업 예외조항) 환전환우선주(RCPS) 추가 ('20년 3차 지침 개정사항 반영)
  - **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)** 전라북도 군산시 포함(산업부 고시 지정연장사항 반영)
  - (체불사업주)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대상으로 하는 조항 신설

# ③ 지원기준

- (신규채용인력 범위 변경)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현금 계상 가능한 신규채용 범위 변경

### 현행

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<del>대한</del> 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

### 변경

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

- (인건비 한도)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 한도를 현금 연구개발비의 50% 이내로 제한(신설)

### 현행

-

### 변경

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총연구 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이내로 계상 가능

# ④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

- (평가절차 단서 조항) 선정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면평가 생략가능 조항 신설('20년 3차 개정사항 반영)

### 현행

선정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<u>서면평가 생략가능</u>

### 변경

선정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면평가 생략가능

- (평가절차 단서 조항) 선정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면평가 생략가능 조항 신설('20년 3차 개정사항 반영)
- (평가기준) 단계별 평가지표 표기
- **(가·감점)** 채용실적에 따른 가점 등 변경된 내용 반영('20년 3차 개정사항 반영)
- ⑤ 신청 및 접수 방법
  - (공통구비서류) 혁신법에 따른 용어(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, 2 등) 변경
  - (세부사업별 구비 서류) 연구개발비 비목별 소요명세 삭제

- ⑥ 유의사항
  - (동시수행 과제수 제한, 3책 5공)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과 관련한 예외 조항 변경(혁신법, 시행령 변경)

### 현행

-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
- ② 사전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
- 검사·분석에 관한 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
- \_\_\_\_\_\_\_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(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 과제 수 계산에
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 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
- ⑥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수로 미포함

### 변경

- ①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과제,
- ② 사전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
- 건사·분석에 관한 과제,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,
-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협약체결시점에 연평균 정부 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 개발기관이 있는 과제
- 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

(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제외)

- (성과물의 공유)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과 관련한 예외 조항 변경 (혁신법, 시행령 반영)

### 현행

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(연구개발성과의 소유)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

### 변경

- ④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16조(연구개발성과의 소유・ 관리) 및 시행령 제32조(연구개발성과의 소유)에 따름
- ⑦ 시스템 접수기간 변경
  - (당초) 구매조건부 : 2021. 1. 18.(월) ~ 2. 8.(월) 네트워크형: 2021. 1. 18.(월) ~ 2. 1.(월)
  - (변경) 구매조건부·네트워크형: 2021. 2. 1.(월) ~ 2. 19.(금)